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10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A Legal Study of Juvenile Protection in the Internet)

2010. 8. 31.

연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8. 31.

연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구원 :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정혜욱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요 약 문

I. 서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 인터넷상의 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해보기로 함
- 유해정보가 실제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면,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 주요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해 내도록 할 것임

II.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물의 현황과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과거 음반이나 비디오물의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는 이를 통해 손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들이 유포되고 있음

- 인터넷과 관련하여 1997년부터 2010년까지 67,955건¹⁾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가 이루어졌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하위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침
-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하위문화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III. 국내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

-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제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고,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
- 또한,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각 청소년보호 법제에 있어서도 원래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고, 인터넷상 보호문제는 부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법제는 현재 충분하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하다고 할 것임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말 매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까지 고시와 통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

IV. 주요 외국의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

- 인터넷 상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기초로서 외국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 EU의 인터넷 상의 청소년 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미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경향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거나 유해정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특별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어 있음
- 일본은 소극적인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인터넷, 특히 인터넷 상의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옴
 - 이에 따라 인터넷 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음
- 독일은 일반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규제는 자율적인 규제에 최대한 맡기고 있지만,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는 금지시키면서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음

- EU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금지규정을 통하여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는 법률이 보호해야 할 매우 중요한 대상임
 -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
 - 따라서 기존 법률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가 부족하거나 미흡하다면,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엄격하고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입법되어야 함

V.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아동청소년의 성숙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개념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 관련 조항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독립법제' 또는 정보통신망법의 '독립장'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묘사되는 음란정보를 제조, 유통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란정보와 구별하여 특별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금지조항이 필요함

- 음란물 외에 도박정보, 사행성 정보와 같은 불법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함

VI. 결론

-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의 일탈을 조장하는 하위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침
- 이와 같은 청소년유해정보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범람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에 무방비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내의 법제는 아직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
-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집중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는 유해정보의 제작과 유통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계수하여야 할 법제라고 판단됨
- 이에 아동청소년을 묘사대상으로 하는 유해물을 집중적인 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아동과 청소년을 나이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유해정보를 특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이를 위하여 독립된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별개의 장으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정을 모아서 입법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고려 가능한 방법임. 이들 두 가지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배경	2
3. 연구의 방법	4
II.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물의 현황과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5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5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	27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33
III. 국내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	37
1. 개요	37
2. 청소년기본법	38
3. 청소년보호법	39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6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4
8.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2
9.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64
10.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6
11.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	67
IV. 주요 외국의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	77
1. 미국	77

목차

2. 일본	87
3. 독일	92
4. EU	97
5. 외국 제도에 대한 검토	99
 V.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02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02
2. 입법론	115
 VI. 결론	136
 참고문헌	138

표 목차

<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28
<표 2>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그 취소	29
<표 3>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심사제도 연혁.....	53
<표 4> 법안의 주요내용 비교.....	59
<표 5> 게임법 개정안 비교.....	62
<표 6>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현황.....	71
<표 7> 청소년 등의 연령 및 규율 내용에 대한 현행법 비교.....	74

그림 목차

<그림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제2010-3호	30
<그림 2> 유해매체물 주 이용 장소	39
<그림 3> 청소년의 컴퓨터와 모바일 이용시간	43
<그림 4> 컴퓨터게임후의 경험 사례	5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함. 이는 연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이 정리가 되면 그와 관련한 국내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함. 그리하여 실제로 이들 유해물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나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비행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논증해보기로 함. 그와 같은 상관관계가 없다면 굳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현재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제도를 점검하기로 함. 이에 관한 법제도가 여러 개의 법에 분산하여 제정되어 있으므로 한 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법제도를 일람하면서 그 문제점도 함께 파악해보기로 함
- 그리고 나서 주요 외국의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법과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그리고 도입할만한 귀중한 제도가 외국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현황, 국내 법제도 그리고 주요 외국의 제도까지 살펴본 후에 개선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기로 함. 그 개선책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연구를 시작함

2. 연구의 배경

- 이와 같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쳐 청소년들이 악한 행위인지 모르면서 또는 알면서도 그에 대한 양심적 거부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정말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되는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연구과정에서 관련성 여부에 대한 논증을 하기로 함

- 어쨌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청소년이 그와 같은 부정적·심리적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해매체물을 접하는 청소년이 모두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 단순하게 논증하자면 예를 들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강간한 남학생들을 체포하여 추궁해보니 포르노 영상을 보고 따라했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 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는 식으로 논리전개를 할 수 있을 것임.
- 연구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회적 현실임
- 또 하나의 출발점은 현행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은 듯 하다는 생각임.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버젓이 이들 유해매체물을 접하는 청소년이 너무도 많다는 것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정말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할 것임

3. 연구의 방법

- 청소년유해물 유포의 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접근하도록 하겠음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설명모델을 이용하여 논증을 시도하도록 하겠음
- 국내의 청소년보호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분석과 판례 검토라는 전형적인 법해석학 기법을 통해서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음
- 외국의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는 비교법적 관찰방법에 의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음
-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정정책 견지에서 접근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해나가는 길을 만들어 볼 것임

II.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물의 현황과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근거법

- 청소년은 어떠한 행위가 본인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사회가 대신해서 무엇이 유해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함. 이렇게 청소년을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²⁾임
-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법이지만 각 매체별 심의기관은 각 매체의 특성에 따른 고유한 근거법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하는 방송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이하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등급분류 내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제정 1997. 3. 7. 법률 제5297호, 최근 개정 2009. 7. 31. 법률 제9785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기본법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각 심의기관별로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러한 각 개별법률에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등급분류 내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그리고 청소년유해행위 등 네 가지임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①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나 ②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함
-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

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함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5개 심의기구에서 음반·방송·인터넷콘텐츠·간행물·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물 로 심의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하며(청소년보호법 제2조),
- 이러한 매체물의 범위에는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 －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및 기타 오락적 관람물’
 -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 「방송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 －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등’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및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포함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요건 및 효과

- 법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할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것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는 행위로 인하여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결정 내지 확인 행위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처분 또는 가결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거나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비로서 표시의무(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 광고선전제한(제20조) 등 법률상 의무를 부담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 또는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고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나,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기 이전의 행위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중 국가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 또는 확인을 제외한 민간기구인 심의기관이 하는 결정 또는 확인행위가 행정처분성을 가지는지 문제임

(2)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 행정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 각 심의기관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심의기관에게 결정취소를 구하도록 통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점,
 - 각 심의기관의 결정에 이은 고시 요청에 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실질적 심사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당해 매체물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의무가 발생하는 점,

-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행정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고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어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가 생기는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금지의무 등 각종 법률상의 의무가 생기고,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그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됨)의 수거, 파기명령,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며,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각 심의기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자체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유해물 표시의무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의무가 생긴다거나 그 밖에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

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이 사건 결정한 심의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의무자에게 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관보에 고시된다고 하여 그 결정사실을 법 제14조, 제15조 소정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다만 이 사건 아이템베이 사이트는 유해매체물 표시의 대상은 되지만 포장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별도로 통보하여 줌으로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신속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라는 심의기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2) 판례

- 1심(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8989)
 - o 2003. 06.27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의 소 제기
 - o 2004. 01.15 : 판결선고(원고 승)

〈 판결이유 〉

피고(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면서 결정 전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이 있다.

- 2심(서울고등법원 2004누3283)
 - 2004.02.20 : 항소장 접수
 - 2005.03.31 : 판결선고(원고패)

〈 판결이유 〉

피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심(대법원 2005두4397)
 - 2005.04.26 : 원고측 상고장 제출
 - 2007.06.14 : 판결선고(파기 환송)

〈 판결이유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소결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종류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경우 각 매체물 단위로 개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음

(1) 개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개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도서, 전자출판, 정보통신매체 등 각 매체별로 단행본 도서, 동영상, 사이트 등과 같이 개별적인 결정이 가능한 단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

(2) 포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개별적으로 고시하지 않고, 시간이나 기간과 같은 일정한 범위 또는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포괄적 고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개별적인 고시 절차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례

(가) 개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례

- 개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는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고시번호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근거, 고시일자, 고시권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일, 고시의 효력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은 필수적기재사항이며, 의무사항 또는 별첨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많은 경우 별지로 유해매체물 목록을 표로 만들어 고시할 수도 있음
- 고시권자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독립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 여부에 따라 과거 독립위원회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권자였으나 2008년 2월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바뀐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고시권자가 변경됨

• 개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방법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2000 - 3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9. 20.

청소년보호위원회

-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인터넷명	정보 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00-1736	엑스존	http://exzone.com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20001725-1	2000.8.25	음란	2000. 9. 27
2000-1737	INOODTV (아이누드TV)	http://www.inoodtv.com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20001724-21	2000.8.24	음란	2000. 9. 27
2000-1738	MANSKOREA (맨스코리아)	http://manskorea.c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20001724-22	2000.8.24	음란	2000. 9. 27

(나)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례

-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 경우도 개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와 마찬가지로 고시번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근거, 고시일자, 고시권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일, 고시의 효력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의무사항 또는 벌칙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가 개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와 다른 점은 향후에도 개별적인 고시가 없이 각종 표시의무나 광고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에서 유해매체물의 특징에 대한 내용기재가 필수적임
- 따라서 포괄적 고시의 내용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가진 매체물의 경우 개별적 고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표시의무나 광고금지의무와 같은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방법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9-33호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와 관련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다 음 -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익년도 2. 7

- 결 정 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1999. 7. 10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중에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99. 7. 3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유 형	제 목	내 용	제작자/ 정보 제공자	제작 년월일	결정 기관	결정 년월일	효력 발생일	결정 사유
2009 -578	인터넷 서비스 (정보 통신물)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이트 1.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2.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3.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제외사항 ■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불문	불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9. 2. 19	2009. 3. 19	청 소 년 에 게 사 행 심 조 장 등 건 전 한 생 활 태 도를 저 해 할 우 려 가 있 음

2009. 3. 5

보 건 복 지 가 족 부

●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유형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년 10월 18일 음란한 성기구 5종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동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포괄고시함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9년 7월 3일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와 관련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을 여름방학은 매년도 7.16 ~ 8.31, 겨울방학은 매년도 12.18 ~ 익년도 2.7까지 결정·고시하고,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중에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함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9년 7월 3일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에 대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18:00~22:00로 결정하여 고시하면서, 유료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함
- ④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9월 20일 청소년 유해물건 목록에 등록된 성기구(5종)를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관련 기구의 전시 소개 및 사용방법 등을 제공하는 PC통신/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함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4년 6월 12일 폰팅(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고용된 종업원과 이용자간에 전화를 통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전화번호 광고,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 불특정 이용자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등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 고시함
- ⑥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2월 4일 화상채팅사이트(불특정 이용자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 중 1.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및 신체노출 프로필 사진 제공하는 사이트, 2. 화상채팅이용료를 유료로 결제하고, 일정한 수익(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이용회원 또는 고용된 자에게 제공하는 사이트, 3. 1:1 미팅, 즉시만남 등 불건전 만남, 데이트, 노예채팅 등 불건전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4. 그 밖에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단, 메뉴 단위로 제공될 경우에는 메뉴단위를 대상으로 한다.)의 특징을 갖는 “성인화상채팅사이트”와 애인대행사이트(불특정 이용자간에 역할대행, 이색아르바이트 등을 중계하는 사이트) 중 구인·구직·아르바이트 개념의 순수한 역할대행사이트나 결혼·교제를 목적으로 신원증명 절차를 거치는 결혼정보사이트를 제외한 1. 역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대행·의뢰 유형에 애인

대행, 키스알바, 파트너대행, 술친구 대행 등 청소년이 대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보가 게재된 사이트, 2.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사진 등을 제공하고자 대행인 및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 닉네임, 만남조건 등 회원대기목록을 게시하고 상호간에 애인대행을 유인하는 사이트, 3. 애인대행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회원간의 만남행위가 실질적으로 조건만남, 역할대행을 유도하여 성매매를 방조·조장하는 사이트(단, 메뉴 단위로 제공될 경우에는 메뉴단위를 대상으로 한다.)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 고시함

⑦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년 3월 5일 게임아이템거래중개 사이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 중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제외하고, 1.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2.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3.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 고시함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심의·결정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

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청소년유해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기 전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심의·결정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이라고 해야 하는지가 의문임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의 구분 필요성
 - 일반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고시이전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로 고시 이전과 고시 이후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은 「청소년보호법」 표시의무, 광고금지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은 중간결정 내지 가결정으로 볼 수 있고 각 종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결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이후에 발생하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는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결정이 동일하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고시 이전의 중간결정과 고시 이후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청소년유해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시이전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은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으로, 고시이후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마련되어 있음. 이에 의하면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임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세부적인 심의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음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다. 청소년유해악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제정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기준 중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관한 심의기준을 음란성과 선정성의 정도에 따라 음란성에 해당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선정성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있음

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기구

(1)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과거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된 후 현재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변경됨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6년 10월 29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2) 각 심의기관

- 현재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심의기관에는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에 대한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성을 심의·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도서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 비디오 영화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및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있음

(3)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절차

-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고시되는 절차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한 경우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함(청소년보호법 제22조 제1항)
-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한 경우: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한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매체물에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해당 매체물의 고시요청을 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게 됨(청소년보호법 제22조 제2항)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과거 음반이나 비디오물의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는 이를 통해 손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들이 유포되고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도서(단행본-4,973건, 정기간행물-6,984건), 만화(단행본-20797건, 연속-1,138건), 방송프로그램(33,991건), 음악(2,191건), 비디오영화(1,612건), 새영상물(게임, CD)(346건), 전자출판(4,718), 전기통신매체(PC통신, 인터넷)(67,955건), 광고(14건), 물건(6건), 전화정보(1건), 약물(1건) 등 매체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인터넷과 관련된 전기통신매체의 경우 1997년부터 2010년까지 67,955건³⁾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하였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말 매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까지 고시와 통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

〈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2009. 12. 31 현재)

연도	고시 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등급위 원회	청소년 보호위 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舊 청 보 위	계
		도 서	정 기 간 행 물	만 화 단 행	만 화 잡 지	광 고	전 자 출 판	영 화	비 디 오 물	게 임 물	음 반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약 물 건 업 소	
												영 화	드 라 마	다 큐	만 화	음 악	기 타	PC 통 신	인 터 넷		
97	19	59	105	1,994	29	11	12	102	444	0	0	1,699	0	1	19	9	8	607	0	5	5,104
98	62	173	416	1,140	52	0	49	151	762	0	0	916	30	12	52	14	0	755	0	0	4,522
99	62	304	388	1,501	14	1	16	71	428	0	4	280	2	5	2	0	4	61	36	1	3,118
00	41	366	699	1,227	0	0	0	(197)	(998)	0	(460)	158	0	9	4	0	67	53	41	1	2,625 (1,655)
01	45	289	983	1,387	1	0	0	(143)	(1,083)	(520)	(1,112)	655	58	5	99	451	975	7	407	0	5,317 (2,858)
02	51	259	1,088	1,492	8	0	3	(86)	(1,454)	(896)	(800)	1,432	33	1	114	19	202	435	851	0	5,947 (3,236)
03	68	611	1,220	1,802	131	0	256	(59)	(1,462)	(936)	(536)	2,768	145	0	3	510	284	0	3,537	0	11,267 (2,993)
04	63	371	528	1,810	269	2	602	(89)	(2,746)	(1,547)	(258)	269	67	2	0	0	0	0	7,657	0	11,577 (4,640)
05	55	334	318	1,464	199	0	817	(69)	(2,936)	(1,734)	(127)	1,304	237	0	15	2	179	0	17,131	1	22,001 (4,866)
06	57	365	339	1,424	78	0	740	(92)	(2,355)	(861)	4	3,001	207	0	29	3	480	0	19,475	0	26,145 (3,308)
07	65	414	377	1,867	46	0	776	(178)	(2,904)	(304)	349	6,506	190	0	151	1	840	0	15,314	0	26,831 (3,386)
08	44	497	280	2,059	53	0	758	(139)	(2,085)	(477)	653	1,041	1,059	0	142	0	609	0	1,198	0	8,349 (2,701)
09	51	809	223	1,756	229		658		(1,960)	(577)	955	3,119	2,094	0	533	0	1,835	0	229	0	12,440 (2,537)
계	683	4,851	6,974	20,923	1,109	14	4,687	324 (1,052)	1,634 (19,989)	0 (7,852)	1,965 (3,293)	23,148	4,122	35	1,163	1,008	5,483	1,918	65,876	8	145,243 (32,180)
총합계		38,558						1,958 (21,035)		0 (7,852)	1,965 (3,293)	34,960						67,794		8	145,243 (32,180)

※ 영화, 비디오물 등 통계중 () 안 숫자는 ‘18세미만 청소년이용불가 매체물’ 숫자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않아 현황 총계에 미포함. 청소년 보호법 <만19세>과 타법 <만18세>과 연령 차이로 고시불가에 기인

-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한 후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표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그 취소

연 도	결 정	결 정 취 소
1997	607	0
1998	755	0
1999	90	7
2000	95	0
2001	400	14
2002	816	470
2003	3,524	13
2004	7,648	8
2005	17,125	6
2006	18,721	12
2007	15,894	11
2008 ⁴⁾	883	315
2009	229	0
2010. 1. ~ 4.	216	1

4)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 이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그 취소 통계 자료임

-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음란·선정 정보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선정 정보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는 폭력정보가 3건 있으나 결정사유 표시는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 예를 들어 2010년 4월 19일에 고시 제2010-3호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KissU”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사유는 음란·선정으로 되어 있으나 키스방에 대한 광고로서 음란이 아니라 선정 정보임을 쉽게 알 수 있음

〈그림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제2010-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이트들은 이른바 ‘성인사이트’로서 대부분 포르노 사진·동영상, 몰래 카메라, 성인만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 이들은 모두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임

-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취지임. 사실 청소년 가운데 2007년까지 혼인이 가능하던 연령인 16세 정도를 넘는 사람은 이미 성적으로 성숙해 있는 상태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의식인 것으로 보임.
-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성관계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가질 수 없는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억제시키지 않을 경우 그것이 일탈적인 형태로 발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판단이고 이에 따라 청소년이 선정적인 매체물과 접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됨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선정적인 것”이란 바로 그 문구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인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의미함⁵⁾. 이를 말 그대로 따르자면 어떠한 형태로든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모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하고 금지해야 할 것임. 정말로 그렇게 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탈레반 정권처럼 여성은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다니게 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학교에서 교육받지도 못하게

5) ‘선정’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박미숙,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7호 (2001. 9/10월호), 10면).

해야 할 것임.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근본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명백함.

-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선정적인 자극은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란 곧 ‘성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해당되는 것은 노골적인 성인물뿐이라 할 수 있음.
-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①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금지되는 ‘성인물’과 ② 성인에게도 금지되는 내용인 ‘음란물⁶⁾’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이들 두 가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6) 음란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성천, 「인터넷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인터넷법률』 (법무부) 제9호 (2001. 11.), 40 ~ 45면 참조.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 청소년이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비행이라는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게 됨. 그러한 측면에서 비행은 불건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원인이 되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가 라는 문제 제기는 통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과연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견해⁷⁾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 비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에 비해 특별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음
- 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⁸⁾도 있음

7) 박미숙,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7호 (2001. 9/10월호), 7면.

- 긍정설은 설문지를 통해 “음란물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⁹⁾”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고는 어떠한 비행을 저질렀는가 답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고 해석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음
- 긍정설을 주장하는 논문의 내용을 보면 성과 관련된 비행(음란 전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창가 출입, 길가는 여성 희롱, 유흥업소 출입, 강간 등)을 저지른 청소년은 대부분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음란물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함
-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우선 음란물에 접촉한 시점과 비행을 저지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정한 법칙성이 발견되지 않음. 또한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음란물에 접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음란물이 비행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
- 조금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으나,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밥을 먹었는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비행을 저지른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기 전 24시간 내에 밥을 먹은 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밥을 먹는 것이 비행의

8) 김준호·박해광,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33면 이하; 김준호·김은경,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7면 이하.

9) 김준호·박해광, 앞의 논문, 56 ~ 57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임

- 물론 어떠한 내용의 매체물이건 그 매체물에 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임. 그러므로 유해한 내용을 가진 매체물은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함
- 하지만 애석하게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거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사정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어 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가 아닌가 하는 단순한 논의보다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됨
- 비행을 포함한 일탈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 체계 가운데 ‘하위문화이론’이라는 것이 있음
- 일탈행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하위문화이론의 내용을 한 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위문화는 전체문화의 하위부문으로서 이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통합시키고, 그 구성원들은 학습을 통해 이 문화의 내용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함¹⁰⁾

- 일탈행위는 일탈하는데 적합한 기술, 규범 위반에의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을 전체 사회질서의 내용에 위배되는 하위문화로부터 배워 내면화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임¹⁰⁾
- 하위문화는 특수 집단이 조직적 측면에서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좁은 의미의 하위문화),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면화한 가치, 신념, 태도일 수도 있다. 개인 차원의 하위문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넓은 의미의 하위문화’라고 함
- 이렇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하위문화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하위문화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0) 김준호·이성식,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제2호 (1987), 120면.

11) 김준호·이성식, 앞의 논문, 121면.

III. 국내 인터넷 상 청소년보호제도

1. 개요

- 우리나라 청소년보호 법제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기존의 법에 인터넷 상의 청소년보호의 제도를 추가하는 입법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기타 사회 문화 영역에서 각 청소년 보호 제도를 가미하는 형태의 입법을 병행하고 있음. 인터넷과 청소년보호의 관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측면에서의 청소년보호 문제와 인터넷상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보호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음. 대부분의 법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측면에서의 청소년보호법제라고 할 것임
- 이하에서는 청소년보호법제를 중심으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의 기초를 제기하고자 함

2.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기본법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제52조(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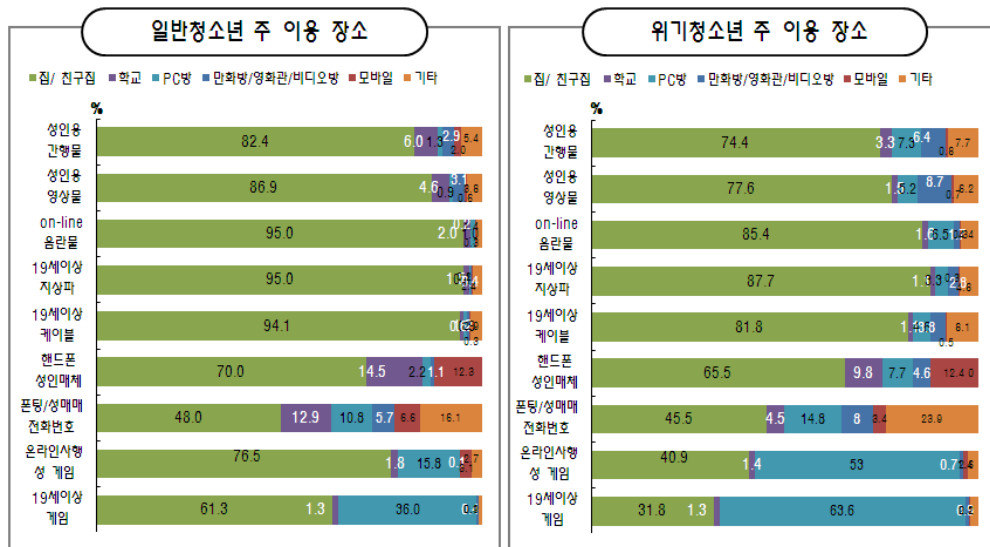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이러한 유해환경에는 유해한 매체가 포함되고(제1항), 청소년에 대한 폭력, 학대, 성매매 등의 유해한 행위가 포함되는바(제2항), 오늘날 인터넷매체는 바로 이와 같은 유해환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청소년기본법은 제52조 제4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을 접하는 장소는 집이나 친구집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가정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것인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컴퓨터, TV 등의 온라인 매

체의 이용 결과라고 할 것임(아래 <그림 2> 참조).

<그림 2> 유해매체물 주 이용 장소



출처 : 여성가족부, 『2009년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보고서』, 2010, 85면¹²⁾

3.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임.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지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12) 일반청소년이란 일반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말하고, 위기청소년이란 특수시설(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보호 중인 청소년을 말한다. 위 여성가족부, 보고서, 5면

매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관을 정하여 해당 기관이 유해매체물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인터넷매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즉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는 매체물로 규정되고, 이 매체물이 관련 심의기관으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매체물의 자율규제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할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됨(제2조 제3호 나목).
- 또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함.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营业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5호 가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

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생략>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내지 (4) <생략>

-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악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인터넷매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임(제8조 제1항 단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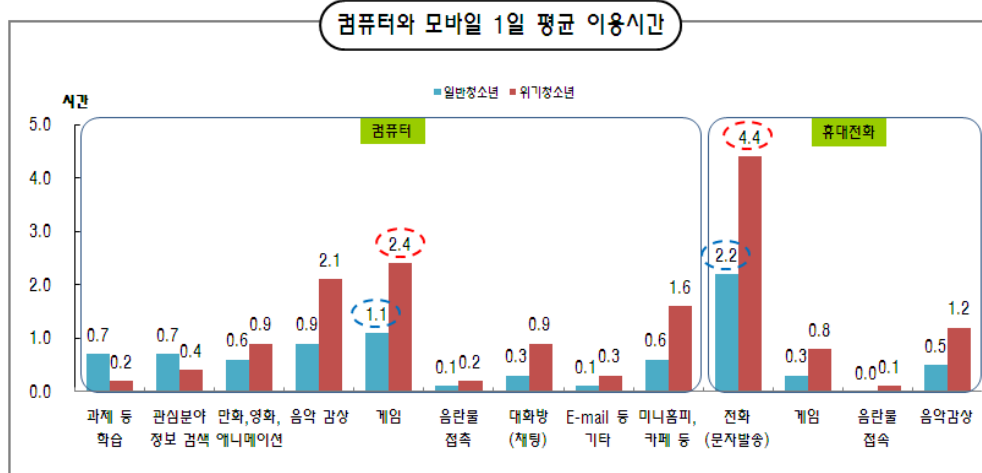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되면 표시의무, 포장의무,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판매금지등, 구분격리등, 방송시간 제한, 광고선전 제한 등에서 제한을 받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인터넷에서의 청소년보호의 필요성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빈도가 기존의 매체의 이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고, 국내법의 한계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은 방송, 신문, 영화 등 기존의 매체 환경과 비교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컴퓨터와 모바일 1일 평균이용시간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 청소년의 컴퓨터와 모바일 이용시간



출처 : 여성가족부(2010), 2009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보고서, 27면

-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소년보호에 관련한 법제도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현재의 인터넷환경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인터넷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제도에 대한 보완은 절실한 과제에 속한다고 할 것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제42조의2),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제42조의3),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 관련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계수한 것 일뿐,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제도로

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유해정보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정보도 인터넷심의의 대상이 되는데,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또는 그와 같은 결정이 있기 전에 매체물제작자 등이 청소년유해매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말함(동법 제12조)
-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에는

그를 표시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예외가 아님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에 의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42조의2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것이 금지된 규정이 그와 같음
-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의 대상이 되지만, 청소년유해정보로써 별도로 심의의 대상이 됨(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정보가 청소년유해성 정보인지 판단하게 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를 고시하게 됨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률인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및 형벌규정을 두고 있음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제2조 제5호)

- 형벌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죄(제8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9조), 비밀누설금지 및 위반범죄(제19조) 규정을 두고 있음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0조 및 제31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인터넷상 영상물의 유통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영상물은 영화와 비디오물로 구분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영상물을 비디오물로 정의하고 있음.
- 즉 2006년 4월 28일 영비법 제정시에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제 등 필요성에 따라 비디오물의 개념에 "통신장치의 재생에 의한 것"을 추가함으로써 인터넷상 영상물에 대한 내용규제 법제를 추가하였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등급분류제에 있어서의 아동 및 청소년보호

- 영화는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한 번 상영되면 그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여 상영전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사전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전규제의 형식으로서 연령별 등급분류제를 취하고 있음¹³⁾
- 영화등급분류제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나누는데, 주된 핵심적 고려사항은 해당 영화를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관람케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영화등급분류제의 목적은 청소년보호와 국법질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하 설명은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법제50조).

서의 보장으로 설명이 되고, 이러한 기능을 '사전정보제공 (Advanced Information)'이라고 함

- 이와 같이 영화등급분류제는 영화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을 세분화하고 학부모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여 사후규제로 전환하거나 그 등급분류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영화 내용규제의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별개로 아동 및 청소년보호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봄

(2) 광고·선전물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

- 영상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은 영상물 그 자체와 분리된 별개의 매체에 해당되지만 본편 영상물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편 영상물과 완전히 분리하여 규제하는 것도 타당한 것이 아님
- 현행법에서는 광고·선전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성 여부만 확인할 뿐 본편 영상물에 대한 연령등급과 같은 세분화된 등급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지 아니함
- 이는 광고·선전물은 본편 영화를 선전하기 위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본편 영화에 비하여 훨씬 짧은 시간으로 구성되고 많은 내용이 생략되기 때문에 본편 영화와 같은 세세한 등급분류를

할 필요가 없고, 만일 세분화된 연령등급을 분류할 경우에는 나중에 등급분류를 받게 되는 본편 영화의 등급과 상이할 수도 있는바 이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케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 그래서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화 광고선전물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규정에 따른 유통은 가능한 것으로 차별되어 있음 (제32조 및 제66조)
- 만일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킨 경우 등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8조 제1항)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①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원래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은 1999년 6월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규제에서 사후확인 또는 업계자율로 변경하였었는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이 범람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후확인제도는 현실적으로 사전심의 만큼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1년 12월부터 다시 사전심의제로 부활한 역사가 있음

〈표 3〉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심사제도 연혁

구 분	근거법률	심의기관	심사방법	기 타 (변경사항)
1996. 6월 이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연윤리 위원회	사전심사를 통해 유해성 없는 경우에는 배포, 게시	
1999. 6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상물등급 위원회	사전심사폐지 (업계자율심의+영등 위 사후확인)	비디오물 규제완화를 위해 광고선전물 사 전심사폐지
2001. 9월	"		광고선전물 영등위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 해 청소년에게 유한 광고선전물에 대한 역기능 해소
2001.12월	"			
2006.10월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전심사 부활 (유해성 없는 경 우에는 배포)	청소년 단체 반반, 유해광고물 범람 등 부 으로 사전심의제 활

출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3) 인터넷 영상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 여기에 더하여 영상물이 인터넷과 결합할 경우에는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 또는 학교에서 유해한 영상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청소년보호의 문제는 인터넷 영상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것임
- 현행 법제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도 가능함.

- 현행 영비법에 의하면 "통신장치의 재생에 의한 것"을 비디오물의 개념에 추가함으로써 인터넷상 영상물에 대한 내용규제 법제도 가능함
-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영상물에 대하여는 "대가없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사전 등급분류제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임.
- 이로써 대부분의 인터넷 영상물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분류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어 최근에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현행법의 내용

- 게임은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그 주된 이용자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보호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매체라고 할 것인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규정을 두고 있음
 - － 첫째,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게 청소년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 게임매체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제12조 제1항)

- 또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제14조 제3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제12조 제2항)

- 게임물에 대한 내용규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서 '청소년보호'를 명시하고 있고(제16조 제1항),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청소년 분야에 종사하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으며(제16조 제4항), 구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업무범위로 설정하고 있음(제16조 제2항)

- 또한 등급분류기준을 개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9조 제2항)

- 둘째,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별한 영업규제방식도 도입하고 있음

- 즉 게임제공업 중에서도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자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

제공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제2조 제6의2호)

－ 셋째, 게임물 내용규제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보호가 주된
핵심적 고려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인데, 이는 영화에 대한 내용
규제와 마찬가지로 할 것임

－ 게임물 내용규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
물을 유통시키기 이전에 사전에 등급을 분류하여 그 등급정보
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연령등급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음

－ 즉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연령등급을 규정하고 있음(제2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
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
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
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7.1.19,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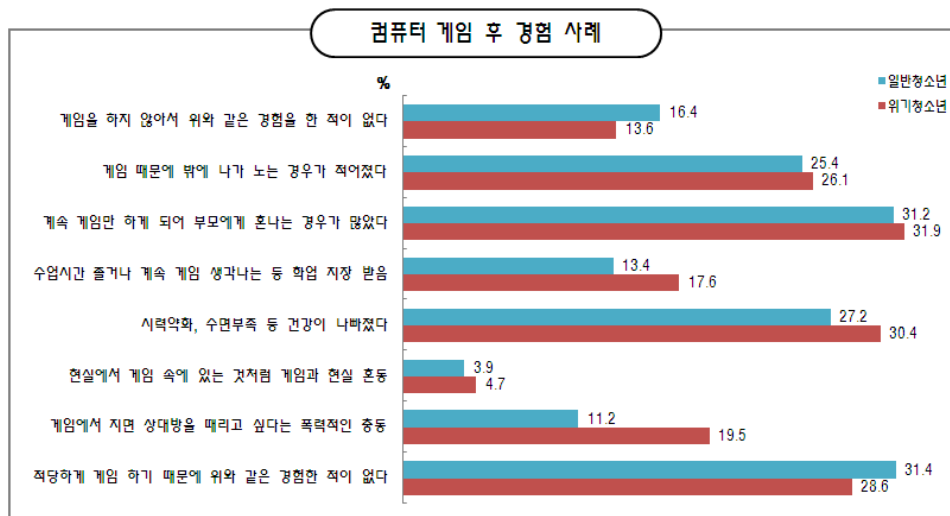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2) 청소년의 게임 몰입 및 미치는 영향

- 청소년이 하루 중 게임을 하는 시간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컴퓨터가 2.4시간, 모바일이 0.8시간 등 합계 3.6시간에 이른다. 컴퓨터 및 모바일의 이용 빈도측면에서 가장 높다고 할 것임(위 <그림 3> 참조)
-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보면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됨. 즉 청

소년은 계속 게임만 하게 되어 부모에게 혼나는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시력악화 및 수면부족 등의 건강이 나빠지는 등의 영향이 보고되고 있음(아래 <그림 4> 참조)

<그림 4> 컴퓨터게임후의 경험 사례



출처 : 여성가족부(2010), 2009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보고서, 29면

(3) 게임몰입 방지를 위한 입법론에 대한 검토

- 청소년보호를 위한 게임몰입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음
-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보면,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규정을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표 4〉 법안의 주요내용 비교

법안명	주요 내용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 소에 관한 법률 안(이성현 의원 대표)	가. 이 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를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해당 인터넷게임물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확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일 이용시간 제한, 이용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그 수단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사.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청소년의 수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게임의 이용료 등에 관한 결제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 수단으로서만 결제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이용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가입한 인터넷게임의 특성·등급, 이용자가 가입한 인터넷게임의 이용요금 등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누구든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해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안)	제19조(게임이용 정보의 제공 등) ① 게임서비스업자는 친권자 등 청소년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게임이용 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게임서비스업자는 이용자의 지나친 게임이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문구를 게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해소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게임 과몰입 관련 법안에 대하여는 중복규제가 문제되고 있음

〈표 5〉 게임법 개정안 비교

게임 과몰입 관련 법안 중복 규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비 고
게임 이용자의 실명·연령 확인	중복	게임산업진흥법에 이미 반영돼 있음
제한적 섯다운제 (일일·주간기준 이용시간 한도 설정)	없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이용시간 제한 관련 조항 반영 가능
강제적 섯다운제 (0~6시 제공 금지)	없음	위험요소로 지난 회기때 폐기된 사안
경고문구 표시	중복	—
친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중복	—
보건복지부장관의 과몰입 예방·상담·치료·재활 활동	중복	—
청소년 가입시 친권자 동의	중복	이미 정보통신망법에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했음



출처 : 경향신문¹⁴⁾

8.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동법에서는 음악영상물(소위 뮤직비디오)에 대한 내용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즉 제17조에 따라 영비법을 준용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게 됨
- 따라서 음악영상물에 대하여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급을 분류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해한 음악영상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

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91813415&code=930507 (2010. 7. 19. 검색)

임

- 또한, 영등위에 의한 등급분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규제의 방법으로 청소년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물 지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¹⁵⁾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라 특정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 여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는바, 특히 청소년보호법에 제8조 제3항 제2호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뮤직비디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함으로써 내용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제97조·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98조제2항제8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음악영상

15) 음악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물 지정 현황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물 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4_05a.jsp 2010.7.8. 검색)

파일"로 본다.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신문, 인터넷신문의 진흥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써 신문 등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후규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청소년보호라는 목적하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규제를 통하여 청소년보호의 효과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 법에 의하면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신문법 제22조 제2항)에는 시도지사가 신문의 발행정지를 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임
- 원래 이 제도는 오프라인상으로 보도된 신문의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인터넷신문을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한 이래로는 인터넷상의 보도내용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의 법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것임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시·도지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매개 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

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

2.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0.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청소년보호에 관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매우 미흡한 법제라고 할 것임
 - 제5조 제5항에서는 "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심의규정에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33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문 제3항에서는 "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視聽者の 연령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 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조 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등급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3, 4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서도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지로 청소년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방송법에 준하여 해석하면 가능할 것으로 봄

11.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

(1)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현행 인터넷상 청소년보호법제의 규제의 성격을 보면 사전규제도 없지 아니하지만 대부분 사후규제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전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영상물등급분류제도, 게임물등급분류제도, 영상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확인제도, 연소자유해공연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확인제도(공연법 제5조)¹⁶⁾ 등이 대표적임
- 그 외 청소년유해매체지정제도, 인터넷심의제도, 형벌제도 등 대부분의 청소년보호제도는 사후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사후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약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전규제에 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

16) 공연물에 대하여는 연소자유해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은 영화나 게임물에 대한 세세한 연령등급에 비하여 획일화한 공연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된 사안이 있다. 동아일보, 지드래곤 소속사 YG, 공연법 위헌심판 신청, 2010.7.20. 보도기사(<http://news.nate.com/view/20100720n01085>. 2010.7.20. 검색)

고, 이에 비하여 사전규제는 정책 집행의 실효성이 강한 반면에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높아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모든 사전규제가 일반적으로 위헌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전형적인 사전규제의 일종인 영화등급분류제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것으로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란 점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음.¹⁷⁾
- 즉 결정을 보면,

(전략) 표현의 자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와 그 수행하는 정치적·사회적 역할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헌법상 보다 강한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표현물의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적인 공개나 유통이 허용될 수는 없다. 표현물에 따라서는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그 접근이나 이용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디오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용 연령 제한으로 인해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지만, 그 공개나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그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는 다르다. 이와 같이 공개나 유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비디오물에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적·행정

17) 헌재 2007.10.04, 2004헌바36, 판례집 제19권 2집, 373면

적 제재를 가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유통금지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그 자체의 당부를 결정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공개나 유통을 전제로 하여 단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미리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전규제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것이고, 특히 인터넷은 한 번 유통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방식 선택시에 사전규제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내용규제와 방법규제

- 현행법제상 인터넷 매체에 대한 청소년보호 방식에서 내용규제와 방법규제 2가지 방식이 병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내용규제의 형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내용규제의 방식으로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여부의 판단, 불법정보의 판단, 영화나 게임물과 같은 문화콘텐츠에서의 연령등급제도,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여부 판단,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확인여부 등이 있음
- 방법규제의 방식으로는, 인터넷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려

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

- 그런데, 내용규제의 방식은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여 그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심의는 콘텐츠의 유통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콘텐츠의 심의는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의 문제와 직접 부딪치는 것으로서 항상 검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인 점에서 그리 장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오히려 방법규제는 콘텐츠의 내용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점에서 훨씬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청소년보호의 규제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함.
- 그런 점에서 미국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필터링 등 방법규제의 방식은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임

(3)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의 체계성의 미흡

-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제는 대부분 오프라인상의 청소년보호 문제

에 집중하고 있어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정부기관의 청소년관련정책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

〈표 6〉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현황

부 처 명	청 소 년 업 무 분 담 현 황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시책 추진 - 매체물, 약물, 업소, 청소년 학대행위 규제 - 성매매 등 성범죄로부터의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지원 등
재 정 경 제 부	주류관련 시책(국세청)
통 일 부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대학생 통일관련 행사지원 등)
외 교 통 상 부	청소년 국제교류,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
법 무 부	범죄소년의 교정교화, 보호관찰, 직업훈련, 갱생보호 등 시책추진
국 방 부	장병의 각종 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계획수립·시행, 호국 안보교육
행 정 자 치 부 (경 찰 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직제조정보완, 야영장 등 조성 및 관리 청소년의 비행예방활동 및 청소년 범죄 단속처리 경찰의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가출청소년 보호업무, 각종 광고물 규제에 관한 업무 사행행위장, 성기구 판매업소 업무 등
교 육 부	청소년 교육, 학교특별 정화시책, 학생의 생활지도, 상담 등
과 학 기 술 부	청소년 과학진흥(각종 경진대회, 과학차 순회운영 등)
문 화 관 광 부	청소년육성정책 총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 청소년지도자, 국제청소년교류, 체육 등 청소년 업무,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
농 립 부	농촌청소년 농업기술 지도 및 해외연수, 임간 수련장 설치·운영,

	한국 4-H 후원회 지원 등
산 업 자 원 부	술 판매·도소매업 관련(청소년 음주) 업무, 청소년유해 완구류 업무 등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 유해정보통신(음성·영상·문자 및 인터넷 관련 업무)
보 건 복 지 부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 문제가정 청소년 보호지원 등 청소년복지 및 아동학대 방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관리 등
환 경 부	유해약물(분드·부탄가스·신나 등) 및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소 관련 업무 등
노 동 부	근로청소년 대책, 청소년 불법취업·노동착취 규제, 직업훈련,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회관 등)건립, 취업알선 등
건 설 교 통 부	청소년관련 기간시설 확충업무 등
해 양 수 산 부	어촌 청소년 지원 등

출처 : 전혁희, 청소년정책의 나아갈 방향, 281면(yp교재원고)

- 또한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 콘텐츠의 유통이나 보관 등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할 것임
- 청소년기본법은 인터넷 적용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청소년보호에 대한 기본법인 점에서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그러나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대한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나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절차 등의 체계 구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망법은 현행 법체계상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지정절차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의 행정소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영비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등 문화예술법에 관하여 보면, 이 법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상의 청소년보호에 치중한 연혁적 이유 때문에 인터넷상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봄. 오늘날 인터넷상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술법제의 청소년보호 체계를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제는 오프라인을 전제로 구성된 연혁적 이유 때문에 그 내용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의 쟁점은 청소년의 접근이나 이용 측면과 인터넷 콘텐츠의 유해성 측면 양자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청소년보호법제 사이에 청소년의 연령의 불통일 문제

-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19세미만으로

보는 반면에 영비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등 문화관련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매체간에 청소년의 연령상의 상이한 문제가 있음 (아래 <표 7> 참조)

<표 7> 청소년 등의 연령 및 규율 내용에 대한 현행법 비교

법률명	연령	규율 내용	명칭	미디어
민법	20세미만	법률행위 능력 부여	미성년자	
형법	14세미만	형사법상 능력	형사미성년자	
공직선거법	19세미만	선거권 부여 연령	선거권 없는 국민	
소년법	19세미만	반사회성있는 소년의 환경조정 등	소년	
청소년기본법	9-24세미만	청소년 육성정책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19세미만	청소년보호	청소년	
식품위생법	19세미만	청소년보호	청소년	
식품위생관리법	19세미만	청소년보호	청소년	
담배사업법	19세미만	청소년보호	청소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세미만	청소년보호	청소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세미만	청소년의 성보호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세미만	청소년 보호	청소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세미만	청소년보호	청소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8세미만	청소년보호 정책	청소년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8세미만	청소년보호 정책	청소년	○
공연법	18세미만	청소년보호 정책	청소년	○
방송법	X	청소년보호	청소년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X		X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X		X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세미만	청소년보호	청소년	○
아동복지법	18세미만	아동 복지 보장	아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보호	아동·청소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세미만	실종아동의 복지 증진	아동	

- 이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들어나는 매체가 바로 인터넷상 영화나 음악파일 또는 게임을 유통시킬 때의 문제임
- 예를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려는 경우에도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바로 지정할 수 없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는 따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는 절차의 중복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념에 대한 혼란을 발생시켜 국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라고 할 것임¹⁸⁾

18) 청소년연령을 18세미만으로 통일하는 입법론이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다. 쿠키뉴스 2008.12.19. <http://news.nate.com/view/20081219n16842>. 2010.7.20. 검색

IV. 주요 외국의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제도

1. 미국

가. 「아동온라인보호법」

-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은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사건에서 「통신품위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후소 법률로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에 의하여 미국 의회는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자 의도
- 이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7세 미만의 자로서 정의하였고(제231조 e항), 적용대상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이나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시간, 노력, 노동을 투입하는 자와 인터넷에 게시된 미성년자 유해물임
 - 미성년자 유해물(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이란, 통신, 사진,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 파일, 녹음, 문서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평균인(average person)이 당대의 공동체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¹⁹⁾에 따라 미성년자와 관

1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이라는 판단요소가 모호한 개념으로서 위헌이라고 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하급심 법원이 금지명령(injunction)을 하였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2년 5월 미국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으로써 종결되었다.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35 U.S.

련하여 고려할 때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것을 의미

－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선정적 방법으로 실제적이거나 가장된(simulated) 성행위, 성기, 유방의 음란한 표현 등을 묘사, 설명, 표현해석, 전체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결여된 내용일 것이 요구됨²⁰⁾

- 이 법에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 － 각 위반당 5만 달러 이하의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 형사제재로서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주간(interstate) 혹은 외국과의 통상에서 이를 유포하는 자에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음
- 한편 동법은 저속한 표현을 한 자에게도 적극적 항변을 허용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 유해물에 대하여 선의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소에 대한 적극적 항변(affirmative

564 (2002).

20) 「아동온라인보호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표현으로서의 외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한 Miller v. California, 413 U.S. 115 (1973)를 받아들인 것이다. Miller 사건에서 정립된 세 가지 기준에 의하면, “정상이건 변태이건, 그리고 실제이건 가장된(simulated) 것이건 궁극적인 성행위를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 (b) 자위행위, 배설기능(excretory functions), 생식기의 추잡한(lewd) 노출 등을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보아 진지한(serious)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학문적 가치를 결여한 것”은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defense)을 인정

-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로는 신용카드, 직불계좌, 성인접속코드(adult access code),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연령 확인 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 that verifies age), 기타 가능한 기술조치를 하는 경우
- 이러한 적극적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사 또는 형사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항변을 이용할 수 있음

나. 「아동인터넷보호법」

-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은 인터넷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립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의 안정성 정책과 기술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정의
 -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미성년자는 17세 미만의 자
 - 기술보호조치(technology protection measure)는 저속한 것, 아동포르노,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여과시켜주는 특정 기술을 의미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harmful to minors) 것이란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누드, 성관계, 배설 등의 성욕에 호소하고 미성년자에게 명백히 선정적인 방법으로 실재 또는 가상의 성행위, 성적인 접촉, 정상 또는 비정상 성행위, 성기의 음란한 노출을 묘사·설명·표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현저히 부족한 것을 의미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기술보호 조치를 포함해서 미성년자에 관한 인터넷 안정성 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정책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 공립 학교와 공립도서관은 컴퓨터 구매나 인터넷 접속 관련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게 됨
- 인터넷안정성정책의 대상
 - ① 인터넷 및 월드와이드웹에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관한 미성년자의 접근,
 - ② 전자우편, 대화방, 기타 형태의 직접 전자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의 미성년자의 안전성 및 보안,
 - ③ 해킹 기타 불법행위를 포함한 온라인상 미성년자의 비허가 접근,
 - ④ 미성년자에 관한 개인 인식 정보의 비허가 공개, 사용, 유포,
 - ⑤ 미성년자의 유해요소에 관한 접근제한조치임
- 동법에 관해서도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003년 6월 23일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도서관의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음란물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음

다.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은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의 보호 및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²¹⁾
- 동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이며,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등과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정보로서 웹사이트가 아동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신상정보 등을 의미
- 동법에 의하면,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운영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종류, 수집된 정보의 이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정보 정책의 고지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
 - 아동으로부터 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부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여기에서의 증명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verifiable parental consent)는 온라인서비스운영자가 아동의 부모가 운영자에게

21) 이 법은 1996년의「아동개인정보보호및부모권한법」(Children's Privacy Protection and Parental Empowerment Act of 1996)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거래단계에서의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아동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합리적인 노력을 의미

- 동법은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체결한 국가간 개인 정보의 전송에 관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에 관하여도 규정
 -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봄²²⁾
 - 운영자는 마케팅 또는 온라인산업 대표단에 의하여 제정된 아동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규제사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사업자가 아동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불공정 또는 사기성 행위나 행태를 정의한 연방통상위원회의 규칙 위반으로 간주됨
 - 연방통상위원회는 동법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동정보의 수집과 공개, 자신이 선택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활용에 대한 효과를 심의하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라. 「아동외설및포르노그래피방지법」

- 「아동외설 및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Obscenity and

22) Welcome to the Safe Harbor, <http://www.export.gov/safeharbor/doc_safeharbor_index.asp> (2010. 7. 20. 방문).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은 아동 외설 및 포르노그래피의 거래를 방지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시각적 묘사에 관한 중개와 교사를 금지하고, 아동대상범죄를 조장하는 아동 외설 및 포르노그래피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 정의
 - 동법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
 - 시각적 묘사(visual depiction)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자가 실제 청소년인지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봉되지 않은 필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디스크나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와 전자적, 기계적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생성된 사진, 필름, 비디오, 그림, 컴퓨터나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나 그림 등을 포함
 - 규제되는 행위로서의 성적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란 실제 또는 가장된 동성이나 이성 사이의 성기 대 성기, 구강 대 성기, 항문 대 성기, 구강 대 항문 사이의 성행위, 수간, 수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 학대, 공공장소에서의 성기의 음란한 전시 등과 동성적 행위의 그래픽 이미지를 의미함
- 동법에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로서 위반자 또는 미수·공모자는 벌금형과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 중범죄로 기소된 개인은 벌금형과 2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둘 이상의 중범죄로 기소된 자는 벌금형과 3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 동법을 위반하거나 미수·공모한 조직(organization)은 벌금형

에 처함

마. 「아동도메인실행및효력법」

- 「아동도메인실행및효력법」(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은 미국법 관할 내에서 13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적합하거나 해롭지 않은 내용만을 포함하는 청신호(green light)로써 국가레벨 2단계 도메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의하여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통신정보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새로운 아동전용 2단계 도메인인 .kids.us의 관리기관으로 뉴스타(NeuStar)사를 선정함
- 동법에 의하여 국립통신정보국은 2단계 도메인인 .kids.us 도메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신설과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터링이나 차단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조화하는 새로운 도메인의 절차에 관하여 부모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도메인의 활용을 공표하여야 함(제157조 d항)

바. 민간부문의 아동보호활동

(1) 관련기관

-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감시, 규제하는 민간기관들은 분야별, 지역별로 많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몇몇 기관들만 예시적으로 소개함

-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SOC-UM(Safeguarding Our Children-United Mothers)²³⁾은 특히 아동포르노와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아동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사이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센터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음
- 주로 사이버범죄의 법집행기관의 네트워크인 CLEO(Cyberlaw Enforcement Organization)²⁴⁾는 다른 법집행기관을 훈련시키고 사이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로는 전세계 경찰들을 온라인 범죄에 대비하여 조직화하고, 사이버범죄, 사이버법률, 수사기술 등에 대하여 교육하며, 경찰에 대한 사이버수사 지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학대, 인터넷상의 아동성학대,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피해자 구제와 교육, 관련 단체 사이의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표준화 등이다. CLEO는 온라인으로 긴급상황이나 아동포르노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음

(2) 방송통신분야의 등급분류를 통한 아동 보호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급부여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PTC와 Common Sense Media가 있음
- 학부모 단체인 PTC(Parents Television Council)²⁵⁾는 유해

23) <<http://www.soc-um.com>> (2010.7.20. 방문).

24) <<http://www.cyberlawenforcement.org>> (2010.7.20. 방문).

25) <<http://www.parentstv.org>> (2010.7.20. 방문).

한 텔레비전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설립되었으며, PTC의 등급체계는 적색, 노란색, 녹색, 군청색으로 나뉜다. 적색은 성인에게만 적합한 것으로서 이유없는 섹스, 노골적 대화, 폭력적 내용,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부적합하여 성인에게만 적합한 등급이다. 노란색은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부적합하며, 10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시청하기 전에 사전 시청할 것을 권고하는 등급이다. 녹색은 모든 연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등급이다. 군청색은 아직 등급이 부여되지 못한 것을 의미

- Common Sense Media²⁶⁾는 미디어평가를 위한 대표적 민간 단체이며,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영화, 텔레비전, 게임, 음악, 웹사이트, 서적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 후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다음 표와 같이 부여

〈표 8〉 시청 등급

	시청하기에 적합함
	어린이 시청, 청취, 열람 등을 권장하지 않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생각해볼 것을 권고
	매 버튼마다 적절한 최소 연령이 표기되어 있음 별 5개는 매우 좋음, 줄어들수록 나쁜 것을 의미하며, 별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나쁨을 의미함

26) <<http://www.common sense media.org>> (2010.7.20. 방문).

- FOSI(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²⁷⁾는 웹사이트에 라벨을 표시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2. 일본

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사진이나 비디오물 등에 아동²⁸⁾포르노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處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²⁹⁾의 적용을 받게 됨

- 동법에 규정된 아동포르노란 사진, 전기적 기록, 타인의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성교 또는 성교 유사행위에 관계된 아동의 모습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또는 타인이 아동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에 관계된 아동의 모습으로서 성욕을 흥분시

27) <<http://www.icra.org>> (2010.7.20. 방문).

28)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29) 1999년 5월 26일 법률 제52호.

키거나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또는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모습으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을 말함(제2조 제3항)

－ 아동포르노를 반포, 판매, 업으로서 대여, 또는 공연히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 소지, 운반, 국내로 수입, 또는 국내로부터 수출한 자 및 외국에서 수입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출한 일본국민도 동일하게 처벌함(제7조 제2항 및 제3항)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동일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을 부과(제11조)

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콘텐츠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風俗營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³⁰⁾의 적용을 받게 됨

30) 1948년 7월 10일 법률 제122호.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법률은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19호로 공포.

- 동 법률에 의하여 특히 인터넷상의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무점포형 성품속 특수영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고서면에는 제출업자의 명칭,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무점포형 성품속 특수영업, 즉 파견형 패션헬스, 성인비디오 등 성인용품의 통신판매, 영상송신형 성품속 특수영업 등이 포함된다. 영상송신형 성품속 특수영업이란, 오로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장면이나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를 나타내는 영상을 보여주는 영업으로서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해한 영상을 전달하는 것(방송이나 유선방송에 의하는 것을 제외)에 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함
-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신고없이 영업하는 자가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관할하는 부서는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 형사과, 경찰본부 생활안전기획과임

다.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³¹⁾은 인터넷상의 교제

31) 2003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 제정, 2008년 5월 28일 법률 제52호로 개정. 이 법률은 소위 “만남계사이트규제법(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이라고도 불리운다.

사이트를 이용한 아동매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이성을 소개해주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통한 아동의 유인, 아동 매춘, 공갈, 원조교제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기 때문
- 이 법률은 강력한 제재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러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교섭을 요구하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금전 지불을 받는 원조교제의 상대방을 물색하는 행위를 말함

라.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³²⁾은,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유해정보³³⁾가 많이 유통됨에 따라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의 향상 및 이용의 보급 기타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기회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

32) 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9호.

33) 동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정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의 열람(시청을 포함)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3호.

치를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 동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게는 기본 이념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동법 제4조)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의무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동법 제5조)

— 보호자(친권자나 후견인)에게도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대한 파악, 인터넷 이용의 적절한 관리,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의무를 부과(동법 제6조)

—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 등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과(동법 제7조). 이는 인터넷 환경의 정비가 비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것임

- 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휴대전화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 및 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에게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제17조 및 제18조)

- 인터넷접속기능을 보유한 기기의 제조사업자에게도 필터링이 용이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판매할 의무를 부여(제19조)
-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개발사업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제20조)
- 청소년유해정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특정서버관리자의 노력의무(제21조)를 규정
-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벌칙이나 규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독일

가. 개관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 독일의 「통신매체법」³⁴⁾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범죄적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형법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됨으로써 예방·진압되고 있음
-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법규에 형사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특별형법을 양산해 내는 대신 가능한 한 형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³⁵⁾ 제16조에 의해 규제를 위임받은 「청소년매체

34) Telemediengesetz (TMG), 제정: 2007. 2. 26.

보호에 관한 주간(州間)협약」³⁵⁾을 통해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금지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형벌도 부과하고 있음
- 이 협약의 운용주체는 주정부이고 독일의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독자적인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음

나. 형법

- 인터넷상의 범죄적 정보에 대한 규제는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이 수행할 임무임
- 인터넷에 범죄적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고, 형사처벌이 가해지면 그러한 행위는 예방·진압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임
- 형법전상의 처벌규정 가운데 인터넷의 범죄적 정보와 관련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문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음
 - － 제86조(위헌조직에 대한 선전물 유포)
 - － 제86a조(위헌조직의 표지 사용)
 - － 제130조(집단 간 증오·갈등 유발)
 - － 제130a조(범죄행위 선동)
 - － 제131조(폭력행위 묘사)
 - － 제184조(음란문서 유포)³⁷⁾

35) Jugendschutzgesetz (JuSchG), 제정: 2002. 7. 23., 최근개정: 2008. 10. 31.

36)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체결: 2002. 8. 8.

37)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형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도

- 제184a조(금지된 성매매 행위)³⁸⁾
- 제184b조(청소년 유해 성매매 행위)
- 제185조(모욕)
- 제186조(명예훼손)
- 제188조(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 제189조(유족의 추모감정 훼손)

다. 청소년보호법

-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범죄적 정보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은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력이 성인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일단 범죄적 정보에 노출되면 강한 악영향을 이미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형사처벌을 통한 사후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보호법은 제18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유해한 내용’의 기록매체 및 통신매체를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시키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비도덕적, 야만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범죄 혹은 인종혐오를 야기하는 매체가 여기에 속함

문서에 포함된다.

- 38) 독일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직업활동이지만,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성매매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독일 형법 제184a조에서 말하는 금지된 성매매란 이와 같은 장소·시간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성매매 행위를 의미한다.

- 이 목록의 작성은 ‘연방 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가 담당
- 연방 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각 주정부가 임명하는 위원 각 1인 및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제19조 제1항)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① 예술, ② 문학, ③ 도서 유통 및 출판, ④ 영상매체 및 통신매체 공급자, ⑤ 청소년복지 자원봉사자, ⑥ 공적 청소년복지 단체, ⑦ 교사 그리고 ⑧ 공법인인 교회, 유대교공동체 및 기타 종교공동체에 해당되는 분야의 추천을 받아 그 분야에 속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시켜서는 안되는 것도 있는데, 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또는 가치관 측면의 내용만이 문제되는 경우, ② 예술이나 학문, 연구 또는 학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인 경우, ③ 묘사의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인 경우 그리고 ④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 청소년유해매체 여부를 판단하고 목록에 등재시키는 일은 연방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단속 실무는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州間)협약」에 따라 주정부가 맡아서 함
- 통신매체가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었는데 그 배포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방 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용자 필터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매체 분야의 공인된 자율규제단체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제24조 제5항)

라.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을 모든 주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것임(협약 제1조)
- 이 협약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제7조 제1항)
- 또한 협약은 형법 구성요건 해당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음(제4조)
 - － 즉, 가상적 묘사를 포함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적으로 강조하는 자세를 묘사한 경우, 가상적 묘사를 포함하여 음란물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남용하거나 수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물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가운데 B와 D에 속하거나 또는 내용상 이러한 목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기타 다른 유형의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가운데 A와 C에 해당하거나 또는 내용상 이러한 목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전파매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 또는 그들의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의 유통은 금지됨
- 나아가 사업자가 아동 및 청소년의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배포하거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는 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령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이를 인지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업자가 ① 기술이나 기타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연령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인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또는 ② 해당연령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제공물을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제5조 제2항)

4. EU

-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1999년 1월 25일 인터넷에서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소비자보호법」(Art 153 consumer protection)에 기초하여 ‘Safer Internet Action Plan’을 채택하였음³⁹⁾
- 이 계획은 2005년부터 ‘Safer Internet Plus Programme’으로 대체되어 2008년까지 시행되었음⁴⁰⁾⁴¹⁾

39) EU에서의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거의 논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외 불법정보 규제 및 청소년 보호 현황』 (KISCOM 정책연구 2007-03), 2007.

40) Decision No 854/2005/EC

41)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2005년 5월 11일 안전한 인터넷 및 새로운 온라인 기술의 사용을 위하여 2005년부터 4년간 ‘Safer Internet plus programme’을 집행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이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각국의 민간 핫라인과 유럽 핫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재

- 그리고 현재 Safer Internet Programme 2009-2013이 수립되어 시행중임
- 이 프로그램은 2013년까지 시행되며,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규율하고,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같은 해로운 행동을 규제하며, 관련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식 기반을 설립하는 것을 새로운 내용으로 함

정지원을 하며,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은 회원국가 및 후보국가에 핫라인 설립을 요구한다. 둘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한다.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적 도구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홍보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하여 차단프로그램과 함께 등급제도와 내용표시를 통해 각국의 문화와 언어적 가치 안에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 셋째,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인터넷 및 새로운 온라인 기술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행동강령 이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해 ‘Safer Internet’포럼을 통해 국가간 공동규제 및 자율규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넷째,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의 조성을 위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뿐만 아니라 P2P, 광대역미디어, 메신저, 채팅 등 급속히 성장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에 있어서도 인종차별, 아동보호 등 다양한 범주에서 불법·유해정보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러한 ‘Safer Internet’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Safer Internet’ 포럼을 통해 유럽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모바일 이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아동의 안전한 모바일 이용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2008년 2월까지 ① 성인정보에 대한 접속통제, ②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 ③ 음란성에 대한 국가 기준에 따른 상업적 정보의 등급분류, ④ 모바일상의 불법정보 대응을 위해 자율규제 강령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자세한 것은 정준현·지성우·최경진,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 효과적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44면 이하 참조.

-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음
- 첫째,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의 국가별 핫라인 네트워킹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활동, 둘째, 유해정보(Unwanted and Harmful Content) 유통의 방지를 위한 활동
- 이를 위하여 필터링 기술의 효과적 접근과 개발 지원, 정보교환과 효과적 스팸 대응, 내용등급 DB의 지속적 구축,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함
- 셋째,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Promoting a Safer Environment)
- 이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 기술적 편리성 등의 이슈들에 대한 의견 조화, 자율규제 강조와 효과성,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반한 행동강령을 제시함
- 넷째, 교사, 학부모 및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인식제고(Raising Awareness)를 위하여 노력

5. 외국 제도에 대한 검토

- 이상에서 미국, 일본, 독일, EU 등 주요 외국의 인터넷 상의 청소년 보호법제를 살펴보았음
- 즉, 미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경향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거나 유해정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신속하고 광범위한 피해의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특별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어 있음

－ 즉,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아동의 설빔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등이 대표적으로 아동을 불법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이외에도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법률로서 「불법인터넷도박집행법」(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 of 2006)이 제정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입법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행정지도와 같이 행정부처의 주도로 규제를 담당해온 것이 기존의 규제 방식이었지만 인터넷, 특히 인터넷 상의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입법이 추진되어 왔음

－ 최근에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의 제정을 통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필터링의무까지 부과하는 매우 적극적인 입법을 전개

－ 이외에도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處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등을 입법하여 청소년 및 아동의 보호를 꾀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규제는 자율적인 규제에 최대한 맡기고 있지만,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는 금지시키면서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음
- EU 차원에서는 EU의 특성상 아직 직접적인 금지규정을 통하여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 각국은 보다 강한 보호 규제를 법률에 설정하고 있음
- 특히, 아동이 포르노의 대상이 되거나, 아동에게 포르노를 비롯한 유해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이 인터넷 상의 유해한 활동, 예를 들면 즉석 만남을 통한 성매매에 악용되거나 성매매의 유인에 활용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음
-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에 대하여도 규제의 대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는 법률이 보호해야 할 매우 중요한 대상임에 틀림없음
- 따라서 기존 법률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가 부족하거나 미흡하다면,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엄격하고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입법되어야 함

V.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가. 아동·청소년 개념의 신설

(1) 내용

-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제에서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개념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인 18세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청소년의 범위는 영아로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단일한 개념으로 청소년보호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함
- 더욱이 인터넷 이용 연령은 다른 매체에 비교하여 어린 연소층으로 하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의 청소년이라는 하나만의 기준에 의하여 보호법제를 구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하되 다만 그 기준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제에 있어서 연령 구별이 초중등학교의 학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재학생까지 '아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구분이라고 할 것임

(2)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2세미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의 자를 말한다.
3. "음란정보"라 함은 제6조에 따른 매체물에 담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심의·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나. 아동·청소년 묘사 음란정보 유통금지 규정 신설

(1) 내용

- 아동청소년 묘사 음란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정보 중에서 아동청소년이 성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 표현되거나 묘사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을 의미함

- 음란물의 제작 또는 유통 등에 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법에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음
-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정보와 성인이 성행위의 주체나 객체가 되는 음란정보를 구분하여 별도로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정보도 성인들이 성행위의 주체나 객체가 되는 음란물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임
- 형법은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성인을 묘사하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묘사되는 음란정보를 제조, 유통하는 행위는 성인이 묘사되는 음란정보를 제조, 유통하는 행위보다 행위 객체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아동·청소년은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에 대한 음란정보와 달리 구분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안

제12조(아동청소년을 묘사하는 음란정보 등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4.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24조 (벌칙)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다.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조항의 개선

(1) 내용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청소년보호 규정을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체계를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계수한 것 일뿐,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제도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 관련 규정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제42조의2),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제42조의3),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제43조)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을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인터넷상 청소년보호법제로 흡수하는 것은 체계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는 독립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타당한 것이고, 만일 정보통신망법에 독립적인 장(예컨대 제00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을 마련할 경우에는 조문 이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 중에서 아동청소년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 이를테면 음란정보, 공포 등 정보,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 사행행위 정보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인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불법정보 규정의 각호 전체를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자는 논의도 가능할 것이나 이를테면 명예훼손 정보나 국가보안법정보는 아동청소년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호의 불법정보 중에서 선택하여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의 경우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있으나,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기는 하였지만 보호 책임자가 보호계획의 수립과 같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왔음. 이에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공적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법률안

제9조(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
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을 묘사하는 음란정보 등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4.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13조(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받고도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라. 필터링 서비스 의무의 신설

(1) 내용

- 음란물은 범죄적 정보로서 무조건 그리고 전면적으로 유통을 금지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해결방안이 간단한 편임
-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에는 성인에게는 접근을 허용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접근을 차단하는 다중적인 조치가 필요함
- 이와 같은 선별적인 조치를 위해서 이른바 연령(등급)에 따른 ‘필터링’이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됨
- 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정보통신기기에 반드시 설치하여 작동시키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임

-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도 나이에 따라 성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을 비교적 상세하게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작동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필터링 프로그램은 각 연령별 접근 차단 대상 매체물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싶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필터링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접근차단 조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등급표시의무까지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법률안

제16조(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의 의무)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삽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해당 기기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 기기제조업자는 해당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등의 의무) ①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아동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배려하여 아동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세하게 등급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
2. 유통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차단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 할 것

②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개발한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필터링 서비스의 성능 및 편리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전송하거나 타인이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아동청소년이 해당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중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연령별로 등급화하여 차등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받고도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선별적 접근차단을 위한 등급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마. 청소년 도메인 네임 규정의 신설

(1) 내용

-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음란정보나 아동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진 각 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 미국의 「아동도메인 실현 및 효력법」(Dot Kids Implemen-

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은 미국법 관할 내에서 13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적합하거나 해롭지 않은 내용만을 포함하는 청신호(green light)로써 국가레벨 2단계 도메인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음

－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도 독자적인 도메인이름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휴대전화사업자, 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 특정서버관리자, 인터넷접속기기제조사업자 등에게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제공 또는 관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도 역기능 또는 문제점에 대한 규제나 처벌과 함께 필터링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도메인이름의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kids.kr (kids) 이나 .jr.kr (junior) 등과 같은 새로운 도메인 이름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만이 유통되고, 주소 운용이나 서버 차원에서 필터링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법률안

제20조 (아동청소년전용도메인이름)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도메인(domain)이름으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정보만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입법론

-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함
- 첫 번째는 독립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여 하나의 장으로 집어넣는 방안임
- 이들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각의 법률안을 제시하기로 함

가. 독립 법률 제정 방안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개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임

(1) 장단점

- 장점 : 독립된 법률로 제정될 경우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법률 제정의 효과가 증대됨

- 단점

- 단일 법률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관련 타법령과 모순 또는 충돌되어 부조화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입법 과정이 다소 복잡함. 그 과정에서 등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반대도 가능함

(2) 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고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2세 미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의 자를 말한다.
3. "음란정보"라 함은 제6조에 따른 매체물에 담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을 말한

다.

4.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심의·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는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

제4조(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을 이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매체물 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제10조(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기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11조(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기관에서 심의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을 묘사하는 음란정보 등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4.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13조(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

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에 대한 규제

제16조(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의 의무)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삽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해당 기기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 기기제조업자는 해당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등의 의무) ①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아동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배려하여 아동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세하게 등급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
2. 유통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차단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 할 것

- ②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아동청소년

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개발한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필터링 서비스의 성능 및 편리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전송하거나 타인이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아동청소년이 해당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아동청소년전용도메인이름)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도메인(domain)이름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정보만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제21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21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1.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제6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27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받고도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선별적 접근차단을 위한 등급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 (몰수) 제24조부터 제26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보통신망법 내에 하나의 장으로 삽입하여 규정하는 방안임

(1) 장단점

- 장점
 - 단일 법률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있게 될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관련 타법령과 모순 또는 충돌되어 부조화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음
 -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함
- 단점 : 독립된 법률로 제정될 경우와 달리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될 수 없어서 법률 제정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2) 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아동"이라 함은 12세미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의 자를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의 자를 말한다.

15. "음란정보"라 함은 제6조에 따른 매체물에 담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을 말

한다.

16.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심의·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제6장의2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제1절 총칙

제44조의11(목적) 이 법은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고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는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

제44조의13(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14(가정의 역할과 책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을 이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15(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의16(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매체물 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의17(국제협력)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

무를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18(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제44조의19(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기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44조의20(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기관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의21(아동청소년을 묘사하는 음란정보 등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4.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22(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3(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4(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에 대한 규제

제44조의25(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의26(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의 의무)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삽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해당 기기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 기기제조업자는 해당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다.

제44조의27(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등의 의무)

①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아동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배려하여 아동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세하게 등급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
2. 유통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차단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 할 것

②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개발한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필터링 서비스의 성능 및 편리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8(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전송하거나 타인이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아동청소년이 해당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9(아동청소년전용도메인이름)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도메인(domain)이름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정보만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략)

12. 제44조의21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묘사되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44조의21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7. 제44조의21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44조의21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10. 제44조의21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자

11. 제44조의22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12. 제44조의23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13. 제44조의24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44조의26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4. (생략)

25. 제44조의2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받고도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77조 (몰수) 제71조부터 제73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VI. 결론

-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의 일탈을 조장하는 하위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침
- 이와 같은 청소년유해정보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범람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에 무방비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내의 법제는 아직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
-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집중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는 유해정보의 제작과 유통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계수하여야 할 법제라고 판단됨
- 이에 아동청소년을 묘사대상으로 하는 유해물을 집중적인 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아동과 청소년을 나이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접근이 불가한 유해정보를 특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이를 위하여 독립된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별개의 장으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정을 모아서 입법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고려 가능한 방법임. 이들 두 가지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참고문헌

- 김성천, 인터넷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인터넷법률』 (법무부) 제9호 (2001. 11.)
- 김은정, 폭력적 컴퓨터 게임과 공격적 비행, 인터넷 비행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의 관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4집 제2호 (2005)
- 김은정 · 김하나, 폭력적 대 비폭력적 게임이 인터넷 게임 중독성향, 청소년의 공격적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제14집 제5호 (2007)
- 김재엽,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생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제17집 제1호 (2010)
- _____,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폭력 가해간 관계 분석. 성별에 따른 경로차이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제31집 (2010)
- 김준호 · 김은경,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김준호 · 박해광,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김준호 · 이성식,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제2호 (1987)
- 남영옥,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음란물 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23집 제2호 (2005)
- 박미숙,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7호 (2001. 9/10월호)

- 신혜섭 · 양혜원,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5집 (2005)
- 여성가족부, 『2009년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보고서』, 2010
- 이성식,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제11집 제2호 (2004)
- 이소희 · 성윤숙, 인터넷음란정보와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청소년복지연구』 제3집 제1호 (2001)
- 이철원,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 성문화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전 문제, 일반계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제23집 (2010)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외 불법정보 규제 및 청소년 보호 현황』 (KISCOM 정책연구 2007-03), 2007
- 정준현 · 지성우 · 최경진,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 효과적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 Anderson C. A. & Carnagey N. L., Violence evil and the general aggressive model, 『The Social Psychology of good and evil』, New York, Guilford, 2004
- Nagayama Hall, G. C., & Hirschman, R., Toward a theory of sexual aggression: A Quadripartite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5), 1991
- Patterson, G., & Yoerger, K., Developmental models for delinquent behavior, 『Mental disorder and crime』, S. Hodgins, Newbury Park, CA, Sage, 1993
- Richard A. Spinello, Regulating Cyberspace: The Policies and Technologies of Control, QUORUM BOOKS, 2002

Samuel D. Castor, "Internet Child Protection Registry Acts: Protecting Children, Parents And... Pornographers? Allowing States to Balance the first Amendment with Parents' Rights to Privacy and Sovereignty in the Home", 59 CATHULR 231 (2009)

Susan Dente Ross, Deciding Communication Law: Key Cases in Contex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

Shama Olfman, The Sexualization of Childhood, Praeger, 2008

Weisa, M. G., Exposure to filmed sexual violence and attitude toward rape, 『Violence』, Montreal University, 1992